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92
----------	-----

2019년 4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6일, 전석기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석기 의원)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2)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12월1일부터” → “11월15일부터”
 -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 “15일”→ “10일”
- (3)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 (안 제11조제4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31조제1항)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실)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 제1항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
제2조 제4항 나목	자연재난대책기간(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자연재난대책기간(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제1호나목
제11조 제4항	방송협의회의 위원장: 안전총괄본부장	방송협의회의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5조
제12조 제3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당연직 위원): 안전총괄본부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당연직 위원): 안전총괄실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5조
제25조 제1항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기한: 15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기한: 10일 이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
제31조 제1항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소속: 안전총괄본부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소속: 안전총괄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제2항 및 제15조
별지 제1호 서식	<p>사회재난 피해신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내용(발생위치, 시설명, 물량) 첨부서류: 피해 입증 사진 등 	<p>사회재난 피해신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피해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세대주 여부, 가족수, 고등학생 수, 도시가스 사용 여부, 계좌번호 등) 피해내용(발생 일시, 장소, 인명피해, 시설피해 등) 확인사항(동일세대 신고여부,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작성방법/처리절차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 안 제2조제1항은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을 2019.3.13.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표] 현행 대비 개정안 비교표(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u>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u>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u>자연재난</u>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 2017.7월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바가 있음.
- 당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근거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이미 유사한 “황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까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황사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았던 것임.
- 최근 한반도에 미세먼지 발생이 보다 심화되면서 국회 역시 미

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보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만, 이를 자연재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황사, 해염, 꽃가루 등의 자연적 요인보다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의 인위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고 미세먼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여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봐야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 2019.3.13.일 동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본 조례 역시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음으로, 안 제2조제4항나목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현행 “12월 1일부터”에서 “11월 15일부터”로 수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제정 2016.4.25.)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동절기 운영기간과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중앙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중앙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夏節期):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冬節期):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복구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안 제25조제1항은 사회재난 피해상황의 신고기한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수정하려는 것 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호(제정 2015.11.30.)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 이와 함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인 안 별지 제1호 서식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2018.11.13.)에 따른 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으로 교체하여 상위 규정과 통일을 기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18.12.31.)에 따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석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2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6일
발 의 자 : 전석기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창원, 우형찬, 김춘례,
채유미, 김경우, 신정호,
권수정, 이성배, 김소양,
김화숙, 최기찬, 조상호,
이승미, 김인호, 최웅식,
김상훈, 박기재, 임종국,
추승우, 오현정, 이정인,
김소영 의원 (22명)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 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면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 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 (안 제2조제4호나목 및 안 제25조제1항)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12월1일부터” → “11월15일부터”
 -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 “15일”→ “10일”
-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 (안 제11조제4항, 안 제12조제3항, 안 제31조제1항)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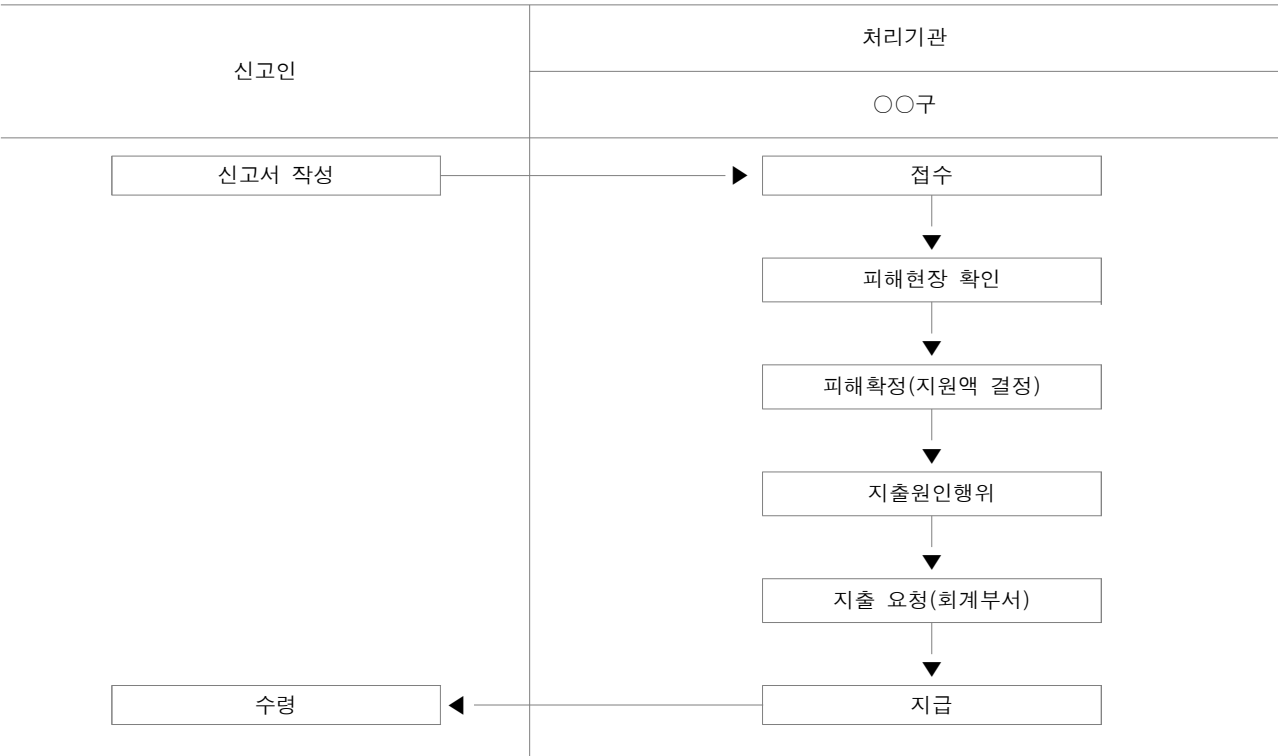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가목의 <u>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u> 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1. ----- ----- <u>자연재난</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 ----- ----- -----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u>12월 1일</u>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나. ----- <u>11월 15일</u> -----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생략)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송협의회는 위원장은 시의 <u>안전</u>	④ ----- <u>안전</u>

총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 4. (생략)
- ⑤ (생략)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② (생략)
- ③ 시의 안전총괄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 ⑨ (생략)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총괄본부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 ④ (생략)

총괄실장

- 1. ~ 4.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 안전총괄실장 ---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
----- 10일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

----- 안전총괄실 -----
-----.

- ② ~ ④ (현행과 같음)